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22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4. 12. 17.
판 결 선 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1)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목록(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별지 1 목록(1) '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목록 '지방세액'란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목록(2) '접수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최초 등기를 한 시점에 이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의 공유관계 해소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는 무상거래이므로 과세표준이 0원임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고납부일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는, 원고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고, 다만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별지 1 목록(1) '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같은 목록 '지방세액'란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별지 1]

목록(1)

순번	원고	등기원인	과세표준 및 시사표준액(원)	지방세액(원)		납부액(원)	납부일
1	A	판결(무상)	101,214,854	취득세	3,542,510	4,048,570	2014. 7. 7.
				지방교육세	303,640		
				농어촌특별세	202,420		
2	B		71,542,813	취득세	2,503,990	2,861,690	2014. 7. 7.
				지방교육세	214,620		
				농어촌특별세	143,080		
3	C		89,027,143	취득세	3,115,950	3,561,080	2014. 7. 7.
				지방교육세	267,080		
				농어촌특별세	178,050		
4	D		120,414,370	취득세	4,214,500	4,816,560	2014. 7. 7.
				지방교육세	361,240		
				농어촌특별세	240,820		
5	E		69,079,994	취득세	2,417,790	2,763,170	2014. 7. 7.
				지방교육세	207,230		
				농어촌특별세	138,150		
6	F		58,094,901	취득세	2,033,320	2,323,780	2014. 6. 11.
				지방교육세	174,280		
				농어촌특별세	116,180		
7	G		63,585,428	취득세	2,225,480	2,543,400	2014. 6. 18.
				지방교육세	127,170		
				농어촌특별세	190,7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별지 2]

목록(2)

부동산의 표시: [redacted]군 H 대 330.9㎡ (갑제1호증의 8)				
원고 A	순위번호	① 이전지분(전명의자)	② 등기원인	③ 접수일자
	24	738분의 73(I)	2013. 7.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5	738분의 196.4(D, J, C)	2012. 11. 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6	738분의 54.5(B)	2012. 12. 4.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7	738분의 10.96(K)	2013. 3. 1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8	738분의 197.74(F, L, M, E, G)	2012. 11.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9	738분의 20.4(N, O)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30	738분의 30(P)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부동산의 표시: [redacted]군 Q 대 186.6㎡ (갑제1호증의 4)				
원고 B	순위번호	① 이전지분(전명의자)	② 등기원인	③ 접수일자
	24	738분의 73(I)	2013. 7.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5	738분의 196.4(D, J, C)	2012. 11. 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6	738분의 10.96(K)	2013. 3. 1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7	738분의 297.74(F, L, M, A, E, G)	2012. 11.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8	738분의 20.4(N, O)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9	738분의 30(P)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부동산의 표시: [redacted]군 R 대 231.7㎡ (갑제1호증의 2)				
원고 C	순위번호	① 이전지분(전명의자)	② 등기원인	③ 접수일자
	24	738분의 73(I)	2013. 7.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5	738분의 124.4(D, J)	2012. 11. 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6	738분의 54.5(B)	2012. 12. 4.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7	738분의 10.96(K)	2013. 3. 1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8	738분의 297.74(F, L, M, A, E, G)	2012. 11.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9	738분의 20.4(N, O)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30	738분의 30(P)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부동산의 표시: [redacted]군 S 대 364.4㎡ (갑제1호증의 9)				
원고 D	순위번호	① 이전지분(전명의자)	② 등기원인	③ 접수일자
	24	738분의 73(I)	2013. 7.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5	738분의 86.4(J, C)	2012. 11. 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6	738분의 54.5(B)	2012. 12. 4.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7	738분의 10.96(K)	2013. 3. 1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8	738분의 297.74(F, L, M, A, E, G)	2012. 11.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29	738분의 20.4(N, O)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30	738분의 30(P)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부동산의 표시: [redacted]군 T 대 362㎡ (갑제1호증의 3)				
원고 E	순위번호	① 이전지분(전명의자)	② 등기원인	③ 접수일자
	24	738분의 36.33(I)	2013. 7.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5	738분의 97.76(D, J, C)	2012. 11. 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6	738분의 27.13(B)	2012. 12. 4.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7	738분의 5.45(K)	2013. 3. 1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8	738분의 121.06(F, L, M, A, G)	2012. 11.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29	738분의 10.16(N, O)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30	738분의 14.93(P)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7. 9.
부동산의 표시: [redacted]군 U 대 182.2㎡ (갑제1호증의 7)				
원고 F	순위번호	① 이전지분(전명의자)	② 등기원인	③ 접수일자
	24	738분의 73(I)	2013. 7.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1.
	25	738분의 196.4(D, J, C)	2012. 11. 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1.
	26	738분의 54.5(B)	2012. 12. 4.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1.
	27	738분의 10.96(K)	2013. 3. 1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1.
	28	738분의 241.74(F, L, M, A, E)	2012. 11.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1.
	29	738분의 20.4(N, O)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1.
	30	738분의 30(P)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1.
부동산의 표시: [redacted]군 V 대 200.7㎡ (갑제1호증의 6)				
원고 G	순위번호	① 이전지분(전명의자)	② 등기원인	③ 접수일자
	24	738분의 55(I)	2013. 7.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8.
	25	738분의 196.4(D, J, C)	2012. 11. 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8.
	26	738분의 54.5(B)	2012. 12. 4.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8.
	27	738분의 10.96(K)	2013. 3. 12.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8.
	28	738분의 237.74(F, L, M, A, E)	2012. 11. 1.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8.
	29	738분의 20.4(N, O)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8.
	30	738분의 30(P)	2013. 12. 23. 상호명의신탁해지	2014. 6. 18.

<끝>